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습지원교육 전담교원 배치 근거 마련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71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0.
3.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u>담당교원</u> ,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전담교원</u> ----- ----- ----- ----- ----- -----.
제9조(학습지원 <u>담당교원</u>)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u>교원</u>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제9조(학습지원 <u>전담교원</u>)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u>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u>담당교원에게</u>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u>담당교원</u>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학습지원 전담교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u> ② ----- -----<u>전담교원에게</u>----- ----- -----. ③ -----<u>전담교원</u> <u>의 배치</u>----- -----.
---	--

「기초학력 보장법」은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상담결과 등에 근거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같은 법 제9조는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 수행을 위하여 교원

1)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습지원담당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해당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업무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업무 등 학습지원교육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시행령 제8조제1항),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여건을 조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8조제2항)2).

한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를 때 성취수준 1수준³⁾ 학생의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 3) 교과별 성취수준은 4단계로 구분되며 그중 1수준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여겨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교과별 ‘1수준’ 비율(%) >

구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7	2.6	7.1	3.2	5.0	9.9	4.1
2018	4.4	11.1	5.3	3.4	10.4	6.2
2019	4.1	11.8	3.3	4.0	9.0	3.6
2020	6.4	13.4	7.1	6.8	13.5	8.6
2021	6.0	11.6	5.9	7.1	14.2	9.8
2022	11.3	13.2	8.8	8.0	15.0	9.3
2023	9.1	13.0	6.0	8.6	16.6	8.7

자료: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결과 발표자료 바탕으로 제작
표준오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발표자료 참고

이에 개정안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던 현행법을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최근의 심화되는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⁴⁾,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과중됨에 따라 교원이 기초학력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습지원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4)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p.4. 참고

5)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p.19. 참고

다만, 현행법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지정’되는 것과 달리 개정안에 따른 학습지원 전담교원의 경우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 있는 학습지원교육 강화를 위하여는 학습지원전담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법률 개정과 함께 교원 정원 증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학력 지원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전담교원의 배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동감하나, 개정안처럼 학습지원전담교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일반교사와 다르게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수업과 업무만을 전담하고, 교과목 수업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어 학교 내 교사 간 업무분장 등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히, 교과교사로 운영되는 중등학교에서는 교과목별 학습지원전담교원을 배치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및 교과목별 교원정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학습지원교육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업무의 일종으로 교사의 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교원자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교원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 및 사회변화 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

으로, 교원의 정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은 개정안은 교원 인력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현재는 학교장 지정 방식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학습지원 전담교원 미배치 학교가 발생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미배치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학생의 학력수준에 따라 일반교원과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구분하여 따로 두는 것은 국가공무원인 교원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기초학력보장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충분히 안착되거나 성과가 평가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습지원 전담교원 배치를 위한 정원 증원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86